

제135차 정기이사회
회 의 록

2017. 12. 21(목)



제135차 정기이사회 회의록

- | |
|---------------------------------------------------------------------------------------------------------------------------------------------------------------------------------------------------------------------------------------------------------------------------------------------------------------------------------------------------------------------------------------------|
| <input type="checkbox"/> 일 시 : 2017. 12. 21.(목) 15 : 00 |
| <input type="checkbox"/> 장 소 : 청주의료원 자혜학당 |
| <input type="checkbox"/> 참 석 자 : 이사 8명, 감사 1명
(손병관, 김낙주, 이철수, 정규호, 이순걸, 조규숙, 이상수, 김동구, 장상교) |
| <input type="checkbox"/> 안 건 : 총 9건 |
| <ol style="list-style-type: none">1. 2017 - 15호 중요재산(의료장비) 매각(안)2. 2017 - 16호 호스피스 병실료 조정(안)3. 2017 - 17호 직제규정 일부개정(안)4. 2017 - 18호 인사규정시행세칙 일부개정(안)5. 2017 - 19호 복무규정 일부개정(안)6. 2017 - 20호 보수규정 일부개정(안)7. 2017 - 21호 진료실적급지급기준 전부개정(안)8. 2017 - 22호 2017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9. 2017 - 23호 2018년도 사업예산(안) |

○ 의 장 : 회의 진행에 앞서 이사 및 감사 변경사항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 ○ 서원구보건소장님이 2017년 11월 1일자로 부임하셨습니다.
앞으로 이사님으로 참석하시겠습니다.

○ ○ ○ 공인회계사님이 2017년 9월 15일자로 감사로 선임 되셨습니다.
앞으로 감사업무를 수행하시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그간 추진되어 온 주요 경영성과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4월 보건복지부에서 주관하는 지역응급의료기관 평가에서 5년 연속 A등급을 달성해 지역내 우수의료기관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우리 청주의료원 응급실은 현재 전원 응급의학과 전문의 체제 24시간 응급진료 실시로 응급환자의 신속하고 정확한 치료가 가능합니다.

5월에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상을 기준의 84병상에서 126병상으로 확대하여 환자의 경제적 부담완화 및 양질의 간호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병원은 충청 유일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선도병원으로도 지정되어 후발 의료기관들에게 운영경험 및 노하우를 전수하고 있습니다.

11월에는 감염관리 체계 확립 및 감염병 예방관리 업무를 성실히 수행해 국민 건강 향상에 이바지한 공로를 인정받아 보건복지부 감염관리 우수기관 선정되었습니다.

현재 심혈관질환, 만성신부전 환자 투석 치료를 위한 심혈관센터 및 인공신장실 운영 중이며 응급진료 및 관련 타과와의 협진체계가 구축되어 진료영역 확대는 물론 병원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지역거점공공병원으로서 수준 높은 의료서비스를 향상 시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여러 이사님들의 많은 성원과 지원 부탁드립니다.

- 의장 : 그러면 지금부터 재적 이사 12명중 8명이 참석하시어 충청북도청주의료원 정관 제21조 및 이사회운영규정 제9조에 따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5차 정기이사회 개회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 의장 : 오늘 심의 · 의결해 주실 안건은 사전에 배부해 드린 중요재산 매각(안)을 포함하여 총 9건입니다.

그러면 금일 제135차 정기이사회 의결안건으로 회의서류 제1페이지 상정번호 제2017-15호 중요재산 매각(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 중요재산 매각(안)에 대하여 관리부장의 제안 설명이 있겠습니다.

[관리부장 중요재산 매각(안) 제안 설명]

- 의장 : 중요재산 매각(안)에 대하여 이사님들의 질문이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 ○ 이사 : 의료장비 내용연수가 5년으로 하셨는데 어느 규정을 적용하신 건가요?
- 관리부장 : 법인세법상 의료장비는 5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 ○ ○ 이사 : 조달청 조달물품의 내용연수에는 생화학분석기의 경우 내용연수가 10년으로 되어있습니다. 다시 내구연한을 어느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지 파악이 필요 할 것으로 보이며, 생화학분석기구입 예산은 있습니까?
- 관리부장 : 고가의 의료장비 구매보다 임대장비 활용이 유리하다 판단되어 임대 활용하고 있습니다.
- 의장 : 법인세법상 5년으로 되어있고 24시간 365일 가동되는 장비로 가장 활용빈도가 높은 장비인데 현재 시약이나 샘플을 검사를 시행할 때 오작동등의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 ○ ○ 이사 : 폐기처분을 하시고 리스로 사용하시면 사용료를 매년 지급해야 되지 않습니까?
- ○ ○ 이사 : 생화학분석기등 의료장비의 경우 업체에서 장비를 임대해 주고 시약비용으로 수익 내는 구조입니다.
- 관리부장 : 내용연수 10년의 경우는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등에 해당되며, 우리는 의료법인으로 법인세법의 적용을 받는 것이 타당합니다.
- ○ ○ 이사 : 의료장비의 경우 빠른 변화가 있는 장비입니다. 따라서 임대,

리스등의 계약 및 조건을 잘 파악하셔야 하겠습니다. 더불어 폐기 처분시에 고철가격 정도만 받을 수 있을 겁니다. 따라서 지역내에 활용기관이 있는지 파악하여 매각시에 참고 하시면 좋겠습니다.

- 의 장 : 세부내역은 원내에서 의견조율 및 외부활용 기관을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요재산 매각(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의 장 : 다음은 제6페이지 상정번호 제2017-16호 호스피스병실료 조정(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 호스피스병실료 조정(안)에 대하여 관리부장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관리부장 호스피스병실료 조정(안) 제안 설명]

- 의 장 : 본건에 대하여 이사님들께서는 질의사항이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 ○ 이사 : 호스피스 병동 가동률이 높은가요?

- 간호부장 : 현재 9병상으로 3인실 2개, 1인실 3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병동에는 항상 6인~8인정도의 인원이 입실 해있고 이는 관내에서 가장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 ○ ○ 이사 : 1인실 가동률이 90%이상 됩니까?

- 간호부장 : 90%정도는 되지 않지만 1인실 3개중 2개는 항상 입실하고 있습니다.

- ○ ○ 이사 : 1인실의 경우 의료급여 환자 및 경제적으로 어려운 서민들이 이용하는 병실은 아니다 판단됩니다. 따라서 다른 병원보다 낮게 책정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관내 병원과 비슷하게 인상 그렇지 않으면 인상하지 않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 의 장 : 우리 호스피스병동은 타지역에서 말기암환자의 경우 청주의

료원 또는 충북대병원으로 안내를 해드리는데 청주의료원을 먼저 권합니다. 시설 및 프로그램이 잘 구성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도 처음에는 10만원으로 인상하자고 했습니다. 그러나 실무진에서 너무 급격한 인상은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 의안처럼 인상안을 상정한 것입니다.

- ○○○이사 : 타병원과 비슷하게 올리자는 취지는 이해합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도 90%이상의 가동률이 되지 않는데 병실료를 인상하면 이용률이 더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 간호부장 : 그러한 염려는 하지 않으셔도 좋을 듯합니다. 왜냐하면 환자분들이 1인실을 비용문제로 사용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호스피스 병동의 특성상 혼자 계시는 것을 외로워하고, 무서워 하시는 분들이 많아 3인실을 선호하시는 겁니다. 또한 병동특성상 3인실이 병실이 없을 경우는 비용에 개의치 않으시고 1인실을 이용하십니다.
- ○○○이사 : 제 생각에도 관내 병원들의 병실료와 비슷하게 10만원으로 인상하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 간호부장 : 일반병동의 1인실이 9만원으로 책정되어 있어 호스피스병동도 동일하게 책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봅니다.
- ○○○이사 : 실무진의 의견을 반영하여 원안대로 인상하는 것도 타당하다 사료됩니다.
- ○○○이사 : 병실료 인상은 단기간에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지금 논의가 될 때 적정한 수가로 현실화 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더군다나 호스피스병동의 경우는 많은 인력 등의 투입이 필요합니다. 그러한 이유로 10만원으로 인상하는 것이 맞다 봅니다.
- 간호부장 : 만약에 일반병실 병실료보다 호스피스 병실료가 많게 되면 일반 병실 1인실을 사용하신다는 분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일반 병동과 동일하게 책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봅니다.
- ○○○이사 : 간호부장님 말씀도 맞는것 같습니다.
- 의 장 : 호스피스병실료 조정(안)은 논의결과 일부 수정하여 9만원으로 인상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의 장 : 다음은 제8페이지 상정번호 제2017-17호 청주의료원 직제규정 일부개정(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 직제규정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관리부장의 제안 설명이 있겠습니다.

[관리부장 직제규정 일부개정(안) 제안 설명]

- 의 장 : 본건에 대하여 이사님들께서는 질의사항이나 의견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 ○ ○ ○ 이사 : 인공신장실 병상수는 몇 베드 입니까?

- 의 장 : 22베드입니다.

- ○ ○ ○ 이사 : 인공신장실의 인력은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 간호부장 : 현 시설규모에서 적정수가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7명의 인원이 필요해 2017년에 정원을 확보했습니다.

- ○ ○ ○ 이사 : 방사선사 증원이 4명인데 초음파실에 1명이 있는데 방사선사가 초음파 검사를 하는데 의료법등의 문제는 없습니까?

- 의 장 : 그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설구조를 항상 심장내과과장님이 볼 수 있는 구조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 ○ ○ ○ 이사 : 방사선사가 심장 내과장을 보조하는 형태로 근무하고 있다 는 말씀이시죠?

- 의 장 : 네 맞습니다.

- ○ ○ ○ 이사 : 의료기술직을 실별로 세분화 할 필요는 없겠습니까?

- 관리부장 : 처음에 실별로 세분화 되었던 부분을 탄력적으로 운용하기 위해 통합한 것입니다.

- ○ ○ ○ 이사 : 장단점이 있을 것이 사료됩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에는 실별

로 분쟁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차후에는 실별로 세분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 관리부장 : 우려하시는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인사위원회에서 직종별 직급별로 구분하여 승진을 조정하고 있습니다.
- 의장 : 이사님 말씀처럼 조직이 커지고 인력이 많아지면 실별로 직급을 관리 하는게 맞지만 우리의료원의 현 상황에서는 지금의 형태가 맞다고 봅니다.
- ○○○이사 : 8명이 증원이 되는데 인공신장실, 심혈관센터관련 수익지출비용을 분석 하신건지요?
- 의장 : 심장초음파기사의 경우 필요인원이며, 기존 기능검사실 업무가 가중되어 심혈관센터 업무까지 맞게 되면 너무나 큰 업무과중이 되어 증원하는 것입니다. 또한 CT실의 경우는 128ch을 운용하면서 촬영하는 사람 1명과 촬영한 영상을 전자적 수정하는 인원 때문에 증원 하는 것 입니다. 적정필수 인원만을 증원하는 것이며, 추가 인력증원은 환자추이를 고려하여 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 ○○○이사 : 사회복지사 증원 요청을 하였는데 호스피스병동 1명은 왜 증원하는 건가요?
- 간호부장 : 호스피스병동 필수 인원으로 현재는 계약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 ○○○이사 : 그러면 사회복지사를 정신과, 호스피스병동에 겸직 할 수 있지 않습니까?
- 간호부장 : 호스피스병동 관련 규정상 겸직을 할 수 없습니다. 또한 정신과 사회복지사의 경우는 정신과 100병상당 1명의 정신사회복지사를 배치해야 합니다. 우리의료원은 252병상으로 3명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 ○○○이사 : 인건비는 한번 늘리면 줄기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겸직이 가능한 부분은 최대한 겸직을 하고, 인력증원에는 최대한 신중의 신중을 기해 주셨으면 합니다.
- 의장 : 현재 병원의 수가는 규정에 따라 평가를 받고 평가에 따라

인센티브를 주는 등 평가에 따라 차등수가를 정하도록 되었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렸던 사무원 정원의 경우는 보류를 하여 청주의료원 자체규정 일부개정(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의장 : 다음은 제13페이지 상정번호 제2017-18호 청주의료원 인사규정 시행체식 일부개정(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 청주의료원 인사규정시행체식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관리부장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관리부장 인사규정시행체식 일부개정(안) 제안 설명]

- 의장 : 본건에 대하여 이사님들께서는 질의사항이나 의견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 ○ ○ 이사 : 임단협 합의는 충북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전국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 관리부장 : 중앙교섭 결정이며 청주, 충주 동일합니다.
- ○ ○ 이사 : 주휴수당을 삭제했는데 문제가 없는지 검토가 필요 할 것 같습니다.
- 기획홍보팀장 : 주휴수당은 단기고용 등에 해당하며 월급제로 운영되는 부준에서는 다른 수당으로 지급해도 문제없을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 의장 : 그 사항을 확인 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청주의료원 인사규정시행체식 일부개정(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의장 : 다음은 제16페이지 상정번호 제2017-19호 청주의료원 복무규정 일부개정(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 청주의료원 복무규정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관리부장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관리부장 복무규정 일부개정(안)) 제안 설명]

- 의 장 : 본건에 대하여 이사님들께서는 질의사항이나 의견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 ○ ○ 이사 : 30년 이상이라 함은 의료원에서 근속연수 30년을 말하는 겁니까?
- 관리부장 : 네 그렇습니다. 의료원에서 근속한 연수만 산정합니다.
- ○ ○ 이사 : 인건비, 병원수익을 연계해서 고려해봐야 될 듯 합니다.
- 의 장 : 병원에서 30년 이상 근무하신 분들이 퇴직하는 날까지 근무를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 ○ ○ 이사 : 병원직원들의 노고취하 및 승진효과를 봐서 직원들의 사기 진작에서는 많은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지금 병원의 상황이 어려운데 시기 또는 기간을 조정하는 것이 어떨까 합니다.
- ○ ○ 이사 : 이러한 혜택을 드릴 때는 직원 모두 합심하여 민간에 비해 부족한 부분의 개선 등 많은 노력이 필요하겠습니다.
- ○ ○ 이사 : 전국의 타 의료원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파악된 부분이 있습니까?
- 노조지부장 : 전국의 200병상 미만 병원은 작년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나머지 병원들은 대부분 합의를 하고 있습니다.
- ○ ○ 이사 : 안건을 통과시켜 드리면 앞으로 전 구성원들이 병원이 경영적으로 안정을 취할 수 있도록 노력 및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 장 : 다른 의견이 없으면 청주의료원 복무규정 일부개정(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의장 : 다음은 제20페이지 상정번호 제2017-20호 청주의료원 보수규정 일부개정(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 청주의료원 보수규정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관리부장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관리부장 보수규정 일부개정(안) 제안 설명]

- 의장 : 본건에 대하여 이사님들께서는 질의사항이나 의견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 ○ ○ 이사 : 연간임금총액 지급율은 무엇입니까?
- 관리부장 : 공무원임금에 준하는 임금을 맞춰 나가면서 일시에 상승시키면 병원경영에 부담되기 때문에 일정부분기간이 지난 후 공무원임금에 준하게 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 ○ ○ 이사 : 모든 직급의 직원들이 1.5%인상되는 것입니까?
- 관리부장 : 네 100%에 도달된 직급 호봉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두 인상이 되는 것입니다.
- ○ ○ 이사 : 1.5%는 별개 입니까?
- ○ ○ 이사 : 별개입니다. 2.6% 인건비 인상과 별개로 다시 또 인상이 되는 겁니다.
- 의장 : 그렇지 않습니다. 2.6%는 보수표상의 인건비 인상이고 1.5%의 경우는 지급률 표에 1.5%인상입니다. 예를 들어 29페이지를 보시면 현행 9급 10호 봉의 경우가 100%를 받지만 개정(안)은 9급 13호봉까지 받는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1.5%인상이 아니라 조금씩 조금씩 인상해서 맞춰 가는 것입니다.
- ○ ○ 이사 : 수익 등을 비교해서 임금인상을 해야 하는데 무조건 적으로 인상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결산 후 지급률

1.5% 인상을 결정했으면 합니다.

- ○○○이사 : 저도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 노조지부장 : 1.5%인상의 경우는 작년에 매년 인상 지급하는 것으로 합의를 했는데 번복하시는 것은 부당합니다.
- 의장 : 작년에 합의를 한 사항 입니까? 그러면 이렇게 안건으로 상정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 노조지부장 : 규정개정을 해야 하는 사항이라 상정을 한 것입니다.
- 의장 : 그러면 작년 회의록을 확인하고 관련사항이 있으면 통과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작년회의록 확인결과 노사합의 사항에서 단체협약 개정조건으로 지급률을 매년 1.5%씩 인상지급하는 것으로 합의를 하였고 그러한 사항을 일부 수당을 삭제하는 안건과 함께 이사회에서 추인을 하였습니다.
- ○○○이사 : 수정제안 하겠습니다. 이사회에서 승인을 하고 결산 후 적자가 나면 후년도에 인상하지 않고 매년 흑자가 나지 않으면 인상하지 않는 것으로 수정했으면 합니다. 이는 병원구성원들이 매년 흑자를 볼 수 있도록 노력하자는 것입니다.
- ○○○이사 : 노조지부장이 이곳에서 바로 결정할 수는 없고 노조전체회의를 통해 결정해야 하는 사항이라 봅니다.
- ○○○이사 : 맞습니다. 근거를 남겨 놓고 노조지부장님이 회의를 하는데 의사들이 절실하게 이러한 제안을 한다고 주장을 하니 우리 전체가 노력하자는 제안을 하셨으면 합니다.
- 의장 : 이사님 말씀처럼 구두에 의한 일부조건이 있는 상태로 청주의료원 보수규정 일부개정(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의장 : 다음은 제31페이지 상정번호 제2017-21호 청주의료원 진료실적 급지급기준 일부개정(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 청주의료원 진료실적급지급기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관리부장의 제안 설명이 있겠습니다.

[관리부장 진료실적급지급기준 일부개정(안) 제안 설명]

- 의장 : 본건에 대하여 이사님들께서는 질의사항이나 의견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 ○ ○ 이사 : 진료부장님 이렇게 가면 의사 확보에 기여가 되겠습니까?
- ○ ○ 이사 : 의사 확보에 기여가 됩니다. 더불어 앞으로는 다른 급여체계를 만들어 나갈 필요가 있겠습니다.
- 의장 :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청주의료원 진료실적급지급기준 일부개정(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의장 : 다음은 제53페이지 상정번호 제2017-22호 청주의료원 2017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 청주의료원 2017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관리부장의 제안 설명이 있겠습니다.

[관리부장 2017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

- 의장 : 본건에 대하여 이사님들께서는 질의사항이나 의견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 ○ ○ 이사 : 커피숍 임대수입이 왜 감소가 되었습니까? 영업이 잘 안되서 그런 건가요?
- 관리부장 : 네 그렇습니다. 커피숍 및 식당의 경우는 매출액에 따른 계약으로 영업실적에 따라 임대수입이 변동됩니다.
- 의장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청주의료원 2017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의장 : 다음은 제39페이지 상정번호 제2017-23호 청주의료원 2018년도 사업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 청주의료원 2018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관리부장의 제안 설명이 있겠습니다.

[관리부장 2018년도 사업예산(안) 제안 설명]

- 의장 : 본건에 대하여 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 ○ 이사 : 예산안대로 잘 운영하셔서 내년에는 좋은 결과 얻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 청주의료원 2018년도 사업예산(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의장 : 이사님들이 강조하신 바와 같이 청주의료원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사님들의 여러 의견과 깊은 논의, 그리고 충고에 감사 말씀 드립니다. 장시간 불편한 자리에도 불구하고 안건을 심의의 결해 주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의 명확함을 기하기 위하여 ○ ○ ○ 이사님과 ○ ○ ○ 이사님께서 회의록에 확인 서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35차 정기이사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봉 3타)